

NEWSLETTER

February 2024

산업안전 · 중대재해팀

Occupational Safety · Serious Accidents Team

CONTACT



변호사 배재덕

T: 02.772.5960
E: jaedeog.bae@leeko.com

변호사 설동근

T: 02.772.4881
E: tongkeun.seol@leeko.com

변호사 송현석

T: 02.772.4691
E: hyunseok.song@leeko.com

변호사 강세영

T: 02.772.4512
E: seyoung.kang@leeko.com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시사점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

2024. 1. 27.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2. 1. 27.부터 우선 시행되었고(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유예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내용대로 2024. 1. 27.부터 5~49명의 중소기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고, 2024. 2. 1.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한 자가진단 리스트

이제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에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중소기업에서는 아래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진단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참고하시면서 각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점검 체계를 정비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이하, 법령 생략)

항목	
안전보건 목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기업 전체, 본사, 사업부서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 목표에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와 더불어 안전보건 활동 등 과정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 경영방침에 모든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작업장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경영방침을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트라넷,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시행령 제4조 제2호)

→ 상시 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4조 제3호)

항목	
■	사업장 내 위험한 장소와 기계·기구 및 유해인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과정 중에는 관련 작업을 반드시 중지하며 개선이 완료된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 제4호)

항목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종사자 의견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에 필요한 내역도 포함)을 편성했다.
■	편성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시행령 제4조 제5호)

항목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해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권한과 책임, 예산 등을 명확하게 부여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 제6호)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적 요건 이상으로 배치했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p>※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적용 사업장</th> </tr> </thead> <tbody> <tr> <td>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td> <td>(건설) 20억 원 ↑ / (제조) 50인 ↑ / (서비스업 등) 300인 ↑ / (기타) 100인 ↑</td> </tr> <tr> <td>관리감독자 (제16조)</td> <td>5인 ↑</td> </tr> <tr> <td>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2조)</td> <td>(건설) 관계수급인 공사 금액을 포함한 20억 원 ↑ (제조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100인 ↑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은 50인 ↑</td> </tr> <tr> <td>안전관리자 (제17조)</td> <td>(건설) 50억 원 ↑ / (제조 등) 50인 ↑ / (부동산, 사진처리업) 100인 ↑</td> </tr> <tr> <td>보건관리자 (제18조)</td> <td>(건설) 800억 원 ↑ ※ 토목공사는 1,000억 원 ↑ (제조 등) 50인 ↑</td> </tr> <tr> <td>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td> <td>(제조,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등) 20~49인</td> </tr> <tr> <td>산업보건의 (제22조)</td> <td>「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선임의무 면제</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	(건설) 20억 원 ↑ / (제조) 50인 ↑ / (서비스업 등) 300인 ↑ / (기타) 100인 ↑	관리감독자 (제16조)	5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2조)	(건설) 관계수급인 공사 금액을 포함한 20억 원 ↑ (제조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100인 ↑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은 50인 ↑	안전관리자 (제17조)	(건설) 50억 원 ↑ / (제조 등) 50인 ↑ / (부동산, 사진처리업) 100인 ↑	보건관리자 (제18조)	(건설) 800억 원 ↑ ※ 토목공사는 1,000억 원 ↑ (제조 등) 50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	(제조,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등) 20~49인	산업보건의 (제22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선임의무 면제
구분	적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	(건설) 20억 원 ↑ / (제조) 50인 ↑ / (서비스업 등) 300인 ↑ / (기타) 100인 ↑																
관리감독자 (제16조)	5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2조)	(건설) 관계수급인 공사 금액을 포함한 20억 원 ↑ (제조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100인 ↑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은 50인 ↑																
안전관리자 (제17조)	(건설) 50억 원 ↑ / (제조 등) 50인 ↑ / (부동산, 사진처리업) 100인 ↑																
보건관리자 (제18조)	(건설) 800억 원 ↑ ※ 토목공사는 1,000억 원 ↑ (제조 등) 50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	(제조,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등) 20~49인																
산업보건의 (제22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선임의무 면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시행령 제4조 제7호)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신고·제안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토사석 광업 등) 50인 ↑ / (농업 등) 300인 ↑ / (건설업) 120억 원 ↑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 / (기타) 100인 ↑ ■ 도급인·수급인 간 안전보건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건설공사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시행령 제4조 제8호)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해당 매뉴얼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 제9호)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2호)**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 대책의 담당자와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 등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3호)**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처분 사실과 내용에 대해 사업주 등에게 보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등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4호)**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 ·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유해 ·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 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조, 제4호)**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령상의 안전 · 보건 교육 항목 및 내용과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파악 · 점검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은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5조)**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했다.

3.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문제되었던 총 13건의 판결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4. 2. 기준).

그렇지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었던 기업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기업일지라도, 법 확대 시행 초기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분쟁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의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